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 6. 19.

관광건설위원회

1. 심사 경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6년 6월 5일

○ 회부일자 : 2006년 6월 5일

상정일자 :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6. 6. 15 :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제안 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권한을 현실에 맞게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조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

3. 검토보고 요지

(관광건설전문위원 유인종)

- 옥외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권한이 시장·군수로 조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의 폐지로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조례 제2715호, 2002. 9. 6)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법률 제7935호)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법률 제7246호)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4.12.23]

제16조 삭제 <2004.12.23>

< 개정전 법률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법률 제6898호, 2003.5.29) ◀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